2022.3.18.

2022학년도 포리초등학교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연수자료명	담당자	쪽수
▶ 불법찬조금 근절 예방 안내 자료	교감	1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안내	교감	2-5
▶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안전인권	6-7
▶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전인권	8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연수	안전인권	9-11
▶ 학생인권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안전인권	12-14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연수	보건	15-16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정보	17-18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방지 연수자료	연구	19-20
▶ 장애 인권 교육	특수	21-22
▶ 교권보호 안내	교무	23
▶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안내	연구	24-26
▶ 2022학년도 학사일정 안내	교무	27
▶ 2022학년도 학사달력	교무	28

포리초등학교

http://www.pori.es.kr/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불법찬조금 근절**	◉ 담당자 : 교무부 포리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은?

-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가중
-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 행위 조장
- 공교육 불신, 학내 갈등의 원인, 학교 교육목적 달성의 장애물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 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전자민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goesh.kr)→ 공직비리 신고 및 상담(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하단)
- Hot-Line : 031-488-2463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청탁 금지법**	◉ 담당자 : 교무부 포리초등학교

청탁금지법이란?

❖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기관 (법 제2조)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소속기관과 대상자

1. 경기도교육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의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과 그 배우자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장 및 임직원과 그 배우자
3. 공사립 유치원 · 특수학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방송 통신중 ·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그 배우자,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5.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임직원
6. 공직자등에게(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민간인

부정청탁이란?

❖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부정 청탁행위의 유형

(법 제5조)

예외사유로 7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 요구 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

부정 청탁시의 처벌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 태 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금품수수의 금지

매번
감사합니다
이정도
금품이면
괜찮을 겁니다
안돼요!!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 태 료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부정 청탁 신고, 신고자의 보호, 보상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사례

▶ 질의1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 응답1

•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질의2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응답2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 : 안전인권부 포리초등학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유형	예시 상황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지도하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달라진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한 이후에는 학교장자체해결 불가능-번복안됨**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음**

(예외: 가해자가 피해자와 약속한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안에 다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 심의위원회 요구 가능)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가정폭력 · 아동학대예방 교육**	담당자 : 안전인권부 포리초등학교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 **교사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 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소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소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요령

1 STEP. **아동학대 발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

2 STEP. **아동학대 신고**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3 STEP. **협력 및 지원**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에 의거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담당자 : 안전인권부 포리초등학교

- 상처받은 마음에 따스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최고 수준(OECD 국가 중 1위)이며,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2009, 통계청)라고 합니다. 최근 일반 서민들의 잇단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자살 전염성이 높은 미성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살은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강한 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자신들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진정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① 발달단계상 자살시도율이 높은 시기
- 전두엽 발달이 완전하지 못하여 종합적 사고가 어려운 시기
- 신체적, 정서적 많은 변화로 인한 격동의 시기
- 지적변화로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도전하는 시기
-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 혼란의 시기
- 학교생활과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② 나름의 분명한 자살 동기
- 자살을 준비하던 중 "나가 죽어라"라는 말이 방아쇠가 되어 바로 시도
- 고통의 끝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선택
-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하는 경향
- 남을 조정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로 선택

③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행함
-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질 때
-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을 때

④ 동반자살, 모방자살 가능성
- 피 암시성이 강함
- 자살사이트를 통한 관심
- 연예인이나 추종자의 죽음으로 연쇄 자살

⑤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후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생각
- 판타지 소설류나 인터넷 게임의 영향
- 대중매체가 전하는 자살소식을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임

2)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그 원인이다.**

☞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 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 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훈계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죽을 거야." 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섣불리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자살징후

• 언어적 단서

◦ '죽고 싶다.', '끝내버리고 싶어.',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지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없어.'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

◦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등의 자기 비하적 표현을 자주 한다.

◦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하는 일이 많아졌다.

◦ 자살에 대해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 심한 우울, 불안감, 무력감, 절망감을 호소한다.

◦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자책감과 죄의식을 표현한다.

• 행동적 단서

◦ 비정상적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유언장을 쓴다.

◦ 평소에 아끼던 물건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준다.

◦ 자살과 관련된 낙서, 글을 쓰는 행동을 보인다.

◦ 자살에 사용할 도구나 장소(예:약물, 노끈, 건물의옥상 등)를 찾거나 감추어 둔다.

◦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 잘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구 먹는다.

◦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 학교에서 멍하게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 행동이매우 느리고 둔하거나 매우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한다.

◦ 침울하거나 괴로워하던 표정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한 상태를 보인다.

◦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심해진다.

◦ 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 **상황적 단서**

◦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성적부진, 집단 따돌림 등 생활상의 심한스트레스가 있다.

◦ 친구, 가족들 중에 자살경험이 있다.

◦ 절망감에 빠져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보이며 복수를 하려고 한다.

5) 자살의 예방과 대처

• 비판 / 충고 / 설교하지 말고 경청하기

•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학생이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열어 놓기

• 자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보살펴주기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봐주시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강한 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자신들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진정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학생인권 교육**	담당자 : 안전인권부 포리초등학교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 10. 5. 공포)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란?

-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성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명기회 보장 등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체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한 규범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의 인권(제5조~제27조),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천계획, 인권기구 등의 체계(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39조~제45조), 보칙(제46조~제47조), 부칙으로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 기구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담당 부서를 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학생인권담당 부서에서는 인권교육·학생인권실천계획 등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진흥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20명 이내)와 도 내 학생으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100명 이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의 책무

-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참여로 제.개정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상호간 인권존중(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학교는 성별.성적.용모.장애.가족환경.징계 등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에 관한 권리(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8조)

학교는 장애.다문화 가정.현장실습.예체능.학습부적응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학교는 두발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학생의 개성 실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참여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사생활의 자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의심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보에 관한 권리(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4조)

학교는 가족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의 학생의 개인 정보가 공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양심 종교의 자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종교 교육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사표현의 자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6조)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검색하여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성폭력 예방 · 양성평등 교육**	◉ 담당자 : 보건실 포리초등학교

1 성폭력에 대한 통념 버리기

①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NO!
➡ 87.6%는 아는 사람,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45.2%,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②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NO!
➡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피해자 저항이 어렵습니다.

③ 가해자는 장난인데 억울하다? NO!
➡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④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NO!
➡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갔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습니다.(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자료)

2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교육법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아들에게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딸에게
가. 여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아라. 나.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라.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마.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바.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아라. 사.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라. (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	가. 평소 너의 주장을 뚜렷이 하여라. 나. 말이나 행동에서 애매한 여운을 보여주지 말아라. 다.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라. 친구와 너의 생각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마. 너를 소중히 여겨라. 바.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3 "성 범죄자는 이런 아이를 두려워 합니다."

1 사랑받는 가정, 안전한 가정환경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등 가족과의 친밀도가 높고, 가족들의 관심도가 높기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 '질문이 많은' 부모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은 부모는 아이의 일상생활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3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

신체적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받은 아이는 애정에 굶주려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는 가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가장된 애정'이 자신의 부모 등에게 받은 애정과 다름을 직감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는 범죄 상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이러한 아이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이를 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아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고, 부모가 아동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들어주고 반응을 하는가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 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정 내에서의 부부간의 평등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여자니까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
"어딜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평등하지 못한 가족 문화	**"따지는 듯한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해보자."**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 자녀 양육 · 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 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OO이는 치마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뻐."	여성스러움을 강요	**"OO이는 독서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	행동, 노력에 대한 칭찬
"가족끼린데 속옷 차림이 뭐 어때."	사춘기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옷차림/행동에서 서로 예의를 지킴**	심리적으로 친밀한 성숙한 가족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하겠어?"	침묵을 강요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 말아라. 같이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 침묵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실천하는 부모님이 되어 주세요.
▶ 성별, 연령에 앞서 '동료, 이웃,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는 포리 가족이 됩시다.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담당자 : 정보부 포리초등학교

자녀의 건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만들어집니다!

학부모용

- **'만 2세' 전에 아이가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아이 앞에서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과의존 예방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나친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가르쳐주세요.
- **교육용 '앱' 보다는 '책'을 읽어주세요.**
  -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 **이른 시기에 노출됐다면, '단번'에 끊어주세요.**
  - '일관적인' 태도로 '단호하게'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도록 지도해주세요.
- **자녀와 보호자의 사용 습관을 함께 점검해보세요.**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사용 습관을 확인해보세요.
-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주세요.**
  -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살펴주세요.
  -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 함께 정한 규칙은 가족 모두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주세요.
  - 스마트폰을 끌 때는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대안활동을 함께해주세요.**
  -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과의존척도(청소년(만 10~19세)자기보고용)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점수 합계					

■ **채점방법 : ① ▶ 1점, ② ▶ 2점, ③ ▶ 3점, ④ ▶ 4점으로 변환**

고위험 사용자군 : 총점 31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요청된다.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 총점 23점 이상~30점 이하

-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으로 과의존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 지침을 따른다.

일반사용자군 : 총점 22점 이하

- 일반사용자군으로 스마트폰의 건전한 활용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공교육 정상화법**	◉ 담당자 : 연구부 포리초등학교

1. 제정 배경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나.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2. 목적

공교육정상화법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선행교육이란?

교육 관련기관이「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나.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함.

4.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및 배제교과(군)

가. 적용교과군

▸ 초등학교 1, 2학년 :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 초등학교 3~6학년 :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영어

나. 적용배제

▸ 영재교육기관, 조기 진급자, 적용 배제 교과(군)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적용되지 않음

※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2020년 3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실시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5. 법령에 따른 부적절 사례

구분			부적절 사례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선행학습 유발 행위 (평가)	재학생	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평가

6.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방지를 위한 방안

편성	·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범위 내에서 편성 - 목표, 내용, 수준, 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

운영	·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 조정 운영 가능

⇓

평가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 평가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장애인식 개선교육**	◉ 담당자 : 연구부 포리초등학교

Ⅰ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통합교육 이란?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됨
2.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Ⅱ 통합교육 Q & A!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 선생님,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일반 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해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살펴본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장애학생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도와 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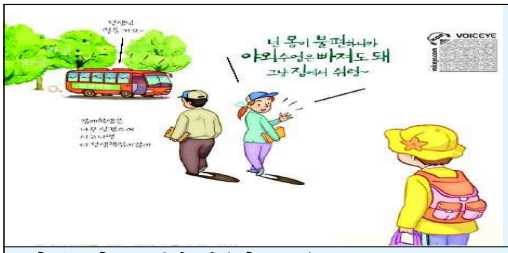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III 평등과 공평 ?!

평등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평등한 발판을 제공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는 발판을 제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멋진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교권보호 안내**	◉ 담당자 : 교무부 포리초등학교

•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담길 예정

3.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행한 사안부터 적용

4.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2022 학교 교육계획

◉ 담당자 : 교무부
포리초등학교

1. 포리 교육 기본 체계

비 전

꿈 · 끼를 계발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행복한 학교

희구하는 인간상

새롭게 생각하며 바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어린이

전통을 이어가는 포리 프로젝트

포리 문화 창출	전통 음악 교육	전통 도예교육	인성교육
	문화적 소양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민주시민역량
	기초학력신장	진로 교육	자연친화체험
	창의적 사고 역량,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자주적 행동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학 교 상	교 사 상	학 생 상	학부모상
꿈과 사랑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가르치는 보람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	행동을 바르고 심성이 바른 어른이	교육을 함께하는 학부모
◉가정처럼 좋은 학교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학교 경영	◉존경 받는 교사 ◉신뢰 받는 교사 ◉정성을 다하는 교사	◉자율적인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 ◉학교와 협력하는 학부모 ◉자녀를 이해하는 학부모

2. 교육목표

교 육 목 표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며 소질을 계발하는 어린이	창의적으로 깊이 생각하며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 어린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의하며 기초체력을 다지는 어린이
소통인	**개성인**	**창의인**	**건강인**

⇧

경영 방침

바른 행동 바른 심성 가꾸기	기초 · 기본 학력 다지기	창의력 신장 및 정보·국제화능력 기르기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기

⇧

본교 교육활동 구현방안

- 기초 질서· 기본 예절의 생활화
- 실천 중심 인성교육
- 사랑의 학교 (학급)만들기
- 교육공동체 의식함양

- 기초학력 및 자율 학습의 정착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독서교육 활성화
- 방과후교육활동활성화

- 체험 학습 교육 활성화
- 전통문화 및 국제이해 교육의 충실
- 과학정보 통신 교육의 강화
- 창의성 교육의 내실화

- 함께하는 학교 문화
- 학교행사의 내실화
- 학교 체육 및 보건교육의 충실

꿈과 배움을 함께 여는 행복한 포리초등학교

☞ 전통을 이어가는 포리 프로젝트

꿈 · 끼를 계발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행복한 학교 문화 창출	전통 음악 교육	전통 도예교육	진실한 인성교육
	♟음악(국악)실의 적극적 활용 ♟국악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국악,난타 동아리 운영	♟도예지 체험학습 ♟도예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도예 동아리 운영	♟교사, 학생, 학부모 소통 기회 확대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 ♟상호존중문화 형성
	기초학력신장	진로 교육	자연친화체험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독서, 한자, 영어교육	♟맞춤형 진로교육 ♟교육공동체로 모두 함께하는 보람있는 학교 (다모임, 스포츠, 동아리)	♟자연생태체험학습 (숲 · 갯골 · 둘레길 · 자유탐구체험) ♟1일형 주제별체험학습

3. 역점 교육 활동 및 특성화 교육 활동

역점교육활동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구 현 활 동	1. 자연 친화 체험학습 -숲 · 갯골 · 둘레길 · 자유탐구체험 2. Step by Step 진로교육 -한 걸음씩 미래로 향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3. 자기주도 학습 역량 다지기 -배움중심 수업과 기초학력 향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4. 지혜를 키우는 독서교육 -아침독서, 학급별 도서관 수업, 온책 읽기 5. 1인 1기 활동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를 통한 1인 1기 활동 및 발표회

특색 교육활동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도요지의 맥을 잇는 도예체험학습장 운영

구 현 내 용	1. 도예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하기 2. 느끼며 배우는 창의인성 도예체험 감성교육 실천하기 3.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지역사회 어울림 공동체 만들기

	학부모총회 연수자료 **2022학년도 학사일정**	◉ 담당자 : 교무부 포리초등학교

2022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포리초등학교

행 사 일	기 간	비 고
시 업 식	2022.03.02 (수)	
입 학 식	2022.03.02 (수)	
여름방학식	**2022.07.22 (금)**	
여 름 방 학	2022.07.23 (토) - 2022.08.23 (화)	32일
개 학 식	**2022.08.24 (수)**	
겨울방학식	2023.01.05 (목)	
졸 업 식	2023.01.05 (목)	
종 업 식	2023.01.05 (목)	
겨 울 방 학	2023.01. 6 (금) - 2023.02.28 (월)	54일
학교자율휴업일	1학기 - 5.6(금)	1일
	2학기 – 개교기념일 2022.11.17 (목)	1일

수업일수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학교자율휴업일수	개 교 기념일	총수업일 수
		21	21	20	20	16	0		98	1	.	190
	2학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학교자율휴업일수	개 교 기념일	
		6	20	19	21	22	4	0	92	0	1	

【참고사항】

* 추석연휴 : 2021.09.20 (월) ~ 2021.09.22 (수)
* 설 연 휴 : 2022.01.31 (월) ~ 2022.02.02 (수)

창의성 · 잠재능력 · 끼를 계발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행복한 학교

2022학년도 학사달력

포리초등학교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입학식 2일(수)
*시업식 2일(수)
*1학기 학급임원선출 11일(금)
*학교설명회 18(금)
*학부모 상담주간 28~4.1
*친구사랑 주간 28~4.1
*삼일절 1일(화)
*대통령선거일 9일(수)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부모공개수업 20일(수)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어린이날 5일(목)
*재량휴업일 6일(금)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통일교육주간 20~24
*지방선거일 1일(수)
*현충일 6일(월)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친구사랑의 날 8일(금)
*여름방학식 22일(금)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여름개학식 24일(수)
*2학기 학급임원선출 26일(금)
*학부모 상담주간 29-9.2
*친구사랑 주간 29-9.2
*광복절 15일(월)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추석연휴 9일(금)
*대체휴일 12일(월)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개천절 3일(월)
*대체휴일 10일(월)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개교기념일 17일(목)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전교임원선거 23일(금)

2023.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종업식 5일(목)
*졸업식 5일(목)
*설연휴 23일(월)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